#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64

발의연월일: 2024. 7. 29.

발 의 자:홍기원·송옥주·이정문

박상혁 • 박정현 • 한준호

이기헌 • 민병덕 • 정진욱

윤종군 의원(10인)

# 제안이유

지난 2021년 발생한 LH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,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'금지행위'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조에서 2조원 대의 임야지분을 팔아치우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'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'하는 형태로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음.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'공유인수 10인 이상'의 임야거래면적만 봐도 2016년 7억 2,334만㎡에서 2020년 8억 4,004㎡로 16% 증가했지만,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 9,000명에서 132만 8,000명으로 47%나 증가한 상황임.

이에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의 경우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정화하고,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소

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 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# 주요내용

가. 부동산매매업 등록제의 도입(안 제22조의2)

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,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토록 함.

나.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(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5) 부동산매매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 전 보증보험 가입의무, 매도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한 매도의무, 토지 지분 처분 시 감 정평가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, 속임수를 통해 부동산등 매수를 유 인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하는 행위, 지속적인 매수강요행위, 부동산자문업에 대한 겸업행위를 금 지함.

다. 부동산자문업 신고제의 도입(안 제22조의8)

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되, 수리간주규정 및 신고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함.

라. 부동산자문업자의 금지행위(안 제22조의10)

부동산자문업자의 고객에 대한 금전대여 및 알선행위, 허위정보 유포를 통해 자문서비스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, 위법

한 거래행위를 권유·자문하는 행위, 이해상충 방지조치 없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함.

# 마.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의 도입(안 제22조의11)

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대행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등록하게 하며,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요건과 자격 을 갖춘 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토록 함과 동시에,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분양대행업무를 영위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.

#### 바.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(안 제22조의13)

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경우 분양대상 부동산등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행위, 속임수를 통해 분양받도록 유인하거나 유인 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 포하는 행위, 지속적인 수분양 강요행위를 금지함.

## 법률 제 호

#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임대"를 "매매·임대"로, "중개"를 "공급 및 공급업무의 일부대행, 중개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부동산서비스 활동을수행하는 사업을"을 "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부동산매매, 부동산자문, 부동산분양대행 및 그 밖에 부동산과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"부동산서비스사업을"을 "부동산매매업자, 부동산자문업자 및 부동산분양대행업자 등 부동산서비스사업을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"부동산매매업"이란 자기의 계산으로 부동산의 매도·매수를 영 업으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을 말한다.
- 6. "부동산매매업자"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[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(이하 "부동산개발업자"라 한다) 및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]을 말한다.
- 7. "부동산자문업"이란 부동산 등의 취득·처분 여부, 취득·처분의 가격 및 시기 등의 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

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을 말한다. 다만,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발행·송신되고,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·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·출판물·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

- 8. "부동산자문업자"란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- 9. "부동산분양대행업"이란 부동산개발업자, 「주택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,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분양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업무, 부동산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, 부동산 분양에 관한 표시·광고, 위 업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공급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을 말한다.
- 10. "부동산분양대행업자"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 제11조제1항 중 "이하 "실태조사""를 "이하 이 조에서 "실태조사""로한다.

제28조 앞의 "제6장 벌칙"을 "제7장 벌칙"으로 한다.

제23조 앞의 "제5장 보칙"을 "제6장 보칙"으로 한다.

제5장(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6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부동산매매업등

제1절 부동산매매업

- 제22조의2(부동산매매업의 등록)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국가 · 지방자치단체
  - 2. 한국토지주택공사, 그 밖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 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(이하 "지방공기업"이라 한다)
  - 4. 「주택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(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  - 5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
  - 6. 그 밖에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
  -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법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

한다.
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의3(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)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을 매도·매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.
  -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해 매도하여야 한다.
  - ③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통해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제22조의4(부동산매매업 등록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1. 미성년자 ·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-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

한 자

- 가. 이 법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건설산업기본 법」,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, 「건축법」, 「부동산투 자회사법」, 「주택법」, 「공인중개사법」, 「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죄
- 나. 「형법」 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48조, 제349조, 제350조, 제350조의2, 제351조 및 제352조의 죄
- 다. 「형법」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
-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
- 4.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5. 다른 부동산 매매법인의 임원(대표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그 매매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1. 부동산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. 이 경우 법인의 대표와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.
- 2. 제22조의15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영업정지기간(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)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. 이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.
- 제22조의5(부동산매매업자의 금지행위)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 금 부동산등을 매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
  - 2.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매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
  - 3.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·팩스·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매수할 것을 강 요하는 행위
  - 4. 부동산등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행위
  - ②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(그 임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준용한다.

- 제22조의6(부동산매매업의 폐업) ①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매매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·공고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의7(부동산매매업자의 실태조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, 의무 이행 여부, 부동산매매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의 일시·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조사시작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  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·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의 요건·

기간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# 제2절 부동산자문업

- 제22조의8(부동산자문업의 신고) ①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② 부동산자문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동산자문업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(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)
    - 가. 이 법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건설산업기본 법」,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, 「건축법」, 「부동산투 자회사법」, 「주택법」, 「공인중개사법」, 「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죄
    - 나. 「형법」 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48조, 제349조, 제350조, 제

350조의2, 제351조 및 제352조의 죄

- 다. 「형법」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
- 2. 제22조의15제2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 이 경우 법인의 대표와 그 폐쇄명령의 원인이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.
- 3. 제22조의9에 따라 부동산자문업의 폐업을 신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- ⑦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.
-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받으면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- ⑨ 제1항,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·변경신고의 절차·방법 및 신고의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의9(부동산자문업자의 휴업 등) 제22조의8제1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자문업자는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 업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22조의10(부동산자문업자의 금지행위 등) ① 부동산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부동산등의 매입을 위해 부동산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직접 금전·증권,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·증권,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·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
  - 2. 부동산등의 매매, 그 밖에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동산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동산등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
  - 3.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자문하는 등 위법한 거래행위를 권유 또는 자문하는 행위
  - 4. 직접 보유하거나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보유한 부동산등의 시세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동산자문서비

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등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반경 이내에 위치한 인근 부동산등의 매수를 권 유하는 행위. 다만, 부동산자문업자가 자문을 행하기 전에 부동산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등의 소유현황을 성실 ·정확하게 설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해상충 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부동산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자문업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## 제3절 부동산분양대행업

- 제22조의11(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 등) ①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,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  - ②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 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

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1.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- 가. 이 법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건설산업기본 법」,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, 「건축법」, 「부동산투 자회사법」, 「주택법」, 「공인중개사법」,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표시・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죄
  - 나. 「형법」 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48조, 제349조, 제350조, 제350조의2, 제351조 및 제352조의 죄
  - 다. 「형법」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
  -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
- 4.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- 5.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 이 경우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.
- 6. 제22조의15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22조의14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(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)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.
- 7.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
- 8. 다른 부동산 분양대행법인의 임원 또는 그 분양대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
-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동산분양대행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한다.
- ⑥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분양대행업무를 하기 전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

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.

- 제22조의12(부동산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교육) ①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분양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고 부동산분양대행업을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, 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교육의 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의13(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) ①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분양대상인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알선하는 행위. 다만,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2.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 금 부동산등을 분양받도록 유인하는 행위
  - 3.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분양받도 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 에게 퍼뜨리는 행위
  - 4. 상대방이 부동산등에 대한 분양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 도 불구하고 전화·팩스·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분양받도록 강요하는 행위

- ② 제1항은 부동산분양대행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(그 임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준용한다.
- 제22조의14(준용규정) 부동산분양대행업의 폐업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6 및 제22조의7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부동산매매업"은 "부동산분양대행업"으로, "부동산매매"는 "부동산분양"으로 본다.

#### 제4절 등록취소 등

- 제22조의15(등록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매매업자 및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2제1항, 제2항, 제22조의11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
  - 2.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 지 못하게 된 경우
  - 3.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의11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
  - 4. 부동산매매업자인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제22조의4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
- 5. 부동산매매업자가 제22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6.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제22조의11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- 1. 제22조의8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
- 2.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
- 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
- 4. 제22조의8제2항 또는 제22조의10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30조에 따른 과태료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
- 5. 제22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매매업자, 부동산자문업자 및 부동산분양대행업자(이하 "부동산매매업자등"이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- 1.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

알선을 통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

- 2.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통해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일부지분을 처분하는 경우
- 3. 부동산매매업자가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
- 4. 부동산매매업자가 제22조의7에 따른 보고, 자료의 제출, 조사,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
- 5. 부동산자문업자가 제22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
- 6.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제22조의1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
- 7.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제22조의14에 따른 보고, 자료의 제출, 조사,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
- 8.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9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매매업자등의 명칭과취소·폐쇄명령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폐쇄를 명하기 위하여 필

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자문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9조에 따라 부동산자문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, 폐쇄명령 및 영업정지에 관한 기준 및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16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등으로 등록・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부동산매매업자, 부동산자문업자, 부동산분양대행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부동산매매업 자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3조제3호 중 "자금지원"을 "금융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실태조사"를 "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"로 한다.

제2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2조의15에 따른 등록취소, 폐쇄명령 및 영업정지

제26조의 제목 중 "업무"를 "권한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업무"를 "권한 또는 업무"로 한다.

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29조부터"를 "제127조 및 제129조부터"로 한다.

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

-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한 법인
- 2. 제22조의8제1항에 따른 부동산자문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 동산자문업을 한 자
- 3.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한 자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22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 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매수하도록 유인 하는 행위를 한 부동산매매업자
- 2. 제22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매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한 부동산매 매업자
- 3. 제22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부동 산자문업자
- 4. 제22조의1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 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분양받도록 유인 하는 행위를 한 부동산분양대행업자

③ 제22조의16을 위반하여 부동산매매업자, 부동산자문업자, 부동산분양대행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부동산매매업자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29조 본문 중 "법인의"를 "법인(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"로 한다.

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한다.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
- 2. 제22조의3제1항 또는 제22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부동산분양대행업자
- 3.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부동산매매업자
- 4.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통해 발급받은 감 정평가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일부 지분을 처 분한 부동산매매업자
- 5. 제22조의5제1항제3호(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

- 다)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을 매수할 것을 강요한 부동산매매업자
- 6. 제22조의5제1항제4호(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자
- 7. 제22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짓으로 보고한 부동산매매업자
- 8. 제2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
- 9. 제2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
- 10. 제22조의1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알선한 자
- 11. 제22조의1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을 분양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한 자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매매 업자
- 2. 제22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거짓보고 또는 보고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

- 3. 제2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
- 4. 제22조의9를 위반하여 휴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
- 5. 제22조의10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
- 6. 제22조의14를 위반하여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
- 7. 제22조의14를 위반하여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
- 8. 제22조의14를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하 거나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거짓보고 또는 보고하 지 않은 자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부동산매매업자등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4, 제 22조의8제3항 및 제22조의11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부동산매매업자등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, 부동산자문업 및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2제1항, 제22조의8제1 항 및 제22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

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부동산서비스"란 부동산에	1
대한 기획, 개발, <u>임대</u> , 관리,	
<u>중개</u> , 평가, 자금조달, 자문,	<u>임대</u> <u>공급 및 공급업</u>
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	무의 일부대행, 중개
다.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"부동산서비스사업"이란 <u>부</u>	3
동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	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
<u>사업을</u> 말한다.	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
	부동산매매, 부동산자문, 부
	동산분양대행 및 그 밖에 부
	동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
	<u> 공하는 행위를</u>
4. "부동산서비스사업자"란 <u>부</u>	4
<u>동산서비스사업을</u> 영위하는	부동산매매업자, 부동산자문
자를 말한다.	업자 및 부동산분양대행업자
	등 부동산서비스사업을
<u>&lt;신 설&gt;</u>	5. "부동산매매업"이란 자기의
	계산으로 부동산의 매도·매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수를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사업을 말한다.

- 6. "부동산매매업자"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[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(이하 "부동산개발업자"라 한다) 및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]을 말한다.
- 7. "부동산자문업"이란 부동산 등의 취득·처분 여부, 취득 · 처분의 가격 및 시기 등의 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을 말한다. 다만,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발행·송신되고,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·수신할 수있는 간행물·출판물·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11조(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 제11조(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 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 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 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"실태 조사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에서 "실태조사"-----

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 한다.

- 9. "부동산분양대행업"이란 부 동산개발업자, 「주택법」 제 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,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2 호에 따른 건축주를 대신하 여 부동산을 분양받기 위하 여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업무, 부동산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, 부동산 분 양에 관한 표시 · 광고, 위 업 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공급업무의 일부를 대행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부 동산서비스사업을 말한다.
- 10. "부동산분양대행업자"란 분 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사) ① ----------<u>이하 이 조</u> ② · ③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

<신 설>
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5장 부동산매매업등 제1절 부동산매매업
- 제22조의2(부동산매매업의 등록)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국가 · 지방자치단체
  - 2. 한국토지주택공사, 그 밖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 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 방공사 및 지방공단(이하 "지방공기업"이라 한다)
  - 4. 「주택법」 제4조에 따라 등 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(주택건설사 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 는 경우에 한정한다)
  - 5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2

호에 따른 건축주

- 6. 그 밖에 등록이 필요하지 아 <u>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 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 간은 3년 이상의 범위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법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의3(부동산매매업자의 의 무)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 산을 매도·매수하기 전에 대

<신 설>

<신 설>
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.

-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 개사의 알선을 통해 매도하여 야 한다.
- ③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통해 발급받 은 감정평가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4(부동산매매업 등록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제 22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 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 외 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

권되지 아니한 자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가. 이 법, 「부동산 거래신 고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, 「건축법의,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, 「구택법」, 「공인중개사법」,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」, 「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 육성에 관한법률」 또는 「표시・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」에서정한 죄

나. 「형법」 제347조, 제347 조의2, 제348조, 제349조, 제350조, 제350조의2, 제35 1조 및 제352조의 죄

- 다. 「형법」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죄
-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

   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

   중 처벌되는 죄
- 4.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5. 다른 부동산 매매법인의 임원(대표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그 매매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22조의2제1 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<u><신</u>설>

- 1. 부동산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. 이 경우 법인의 대표와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.
- 2. 제22조의15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22조의 6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영업정지기간 (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)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. 이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.
- 제22조의5(부동산매매업자의 금 지행위)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 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 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매 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
  - 2.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 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

매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 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 리는 행위

- 3.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매수할

  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

   불구하고 전화·팩스·컴퓨

   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

   등을 매수할 것을 강요하는

   행위
- 4. 부동산등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행위
- ②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로 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 거나 대행하는 자(그 임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준용 한다.
- 제22조의6(부동산매매업의 폐업)
  ①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부
  동산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
  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
  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은 부동산매매업의 등록을 말 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고 · 공고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제22조의7(부동산매매업자의 실 태조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등록기준 에의 적합여부, 의무 이행 여 부, 부동산매매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 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 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 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 게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 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 사 또는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 자에게 조사시작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 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<u><신 설></u> <신 설> <u>인정하는</u>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·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의 요건·기간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절 부동산자문업 제22조의8(부동산자문업의 신고) ①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부동산자문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 면 변경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동산자문업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
  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

  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

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(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 한다)

가. 이 법, 「부동산 거래신 고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,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」, 「구택법」, 「건축법」, 「주택법」, 「공인중개사법」, 「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」, 「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 육성에 관한법률」 또는 「표시・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」에서정한 죄

나. 「형법」 제347조, 제347 조의2, 제348조, 제349조, 제350조, 제350조의2, 제35 1조 및 제352조의 죄 다. 「형법」 제355조부터 제 357조까지 및 제359조의

죄

-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

   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

   중 처벌되는 죄
- 2. 제22조의15제2항에 따라 영 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 이 경우 법인의 대표와 그 폐쇄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 를 한 자를 포함한다.
- 3. 제22조의9에 따라 부동산자문업의 폐업을 신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 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 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 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 로 본다.
- <u>⑥</u>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 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

3년으로 한다.

①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 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 을 하려는 자는 신고를 갱신하 여야 한다.

8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⑨ 제1항,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·변경신고의 절차·방법 및 신고의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9(부동산자문업자의 휴업 등) 제22조의8제1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자문업자는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10(부동산자문업자의 금 지행위 등) ① 부동산자문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<u><신</u> 설>

<신 설>

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.

- 1. 부동산등의 매입을 위해 부 동산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직접 금전·증권,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 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·증 권,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·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
- 2. 부동산등의 매매, 그 밖에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동산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동산등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
- 3.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자문하는 등 위법한 거래행위를 권유 또는 자문하는 행위
- 4. 직접 보유하거나 「국세기본

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 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등 의 시세를 상승시킬 목적으 로 부동산자문서비스를 이용 하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등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반경 이내 에 위치한 인근 부동산등의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. 다만, 부동산자문업자가 자문을 행 하기 전에 부동산자문서비스 를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부 동산등의 소유현황을 성실・ 정확하게 설명하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자 문업의 질서유지 및 부동산자 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자문업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 <u><신 설></u> <신 설> 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제3절 부동산분양대행업
제22조의11(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 등) ① 부동산분양대행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 금,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- ②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 록을 하여야 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을 할수 없다.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

권되지 아니한 자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가. 이 법, 「부동산 거래신 고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건 설산업기본법」, 「건축물 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, 「건축물 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, 「건축법」,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, 「주택법」, 「공인중개사법」,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」 또는 「표시・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「형법」 제347조, 제347 조의2, 제348조, 제349조, 제350조, 제350조의2, 제35 1조 및 제352조의 죄

- 다. 「형법」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죄
-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

   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

   중 처벌되는 죄
- 4.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있는 자
- 5.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 이 경우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.
- 6. 제22조의15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22조의 14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(폐업에도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)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 이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

- 우에는그영업정지처분의원인이된행위를한자와대표자를포함한다.
- 7.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
- 8. 다른 부동산 분양대행법인의

   임원 또는 그 분양대행법인

   이 발행한 주식 총수를 기준

   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

   가장 많은 자
-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 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 간은 3년 이상의 범위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동산분양대 행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⑥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 산분양대행업무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

<신 <u>설></u>

<u><신 설></u>

다.

⑦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등록 ·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12(부동산분양대행업자 에 대한 교육) ① 제22조의11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분양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고 부동산분양대행업을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, 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, 교육의 방법·절 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13(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) ① 부동산분양대 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분양대상인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알선하 는 행위. 다만, 개업공인중개

사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함 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
- 2.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 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 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분 양받도록 유인하는 행위
- 3.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분양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
- 4. 상대방이 부동산등에 대한 분양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・ 팩스・컴퓨터통신 등을 통하 여 부동산등을 분양받도록 강요하는 행위
- ② 제1항은 부동산분양대행업 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 리하거나 대행하는 자(그 임직 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준용한다.

제22조의14(준용규정) 부동산분양 대행업의 폐업 및 실태조사 등

<신 설>

<u><신 설></u> <신 설> 에 관하여는 제22조의6 및 제2 2조의7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부동산매매업"은 "부동산분양 대행업"으로, "부동산매매"는 "부동산분양"으로 본다.

제4절 등록취소 등

제22조의15(등록취소 등)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부동산매매업자 및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4호부 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2제1항, 제2항, 제22 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
- 2.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3.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의 의11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

- 4. 부동산매매업자인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5. 부동산매매업자가 제22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게 된 경우
- 6.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제22조의11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자 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 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- 1. 제22조의8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
- 2.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
- 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

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 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

- 4. 제22조의8제2항 또는 제22조의10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제30조에 따른 과태료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
- 5. 제22조의8제3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매 메업자, 부동산자문업자 및 부 동산분양대행업자(이하 "부동 산매매업자등"이라 한다)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- 1.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개업공인 중개사의 알선을 통하지 않 고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
- 2.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 법인등을 통해 발급받은 감

- 정평가서를 매수인에게 교부 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일부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
- 3. 부동산매매업자가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
- 4. 부동산매매업자가 제22조의7 에 따른 보고, 자료의 제출, 조사, 검사를 거부・방해 또 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
- 5. 부동산자문업자가 제22조의1 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
- 6.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제22조의13제1항 각 호의 행위를한 경우
- 7.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제22 조의14에 따른 보고, 자료의 제출, 조사, 검사를 거부·방 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
- 8.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

- 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
- 9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 한 경우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 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매매업자등의 명칭과 취소・폐쇄명령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폐쇄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자문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9조에 따라 부동산자문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, 폐쇄명령 및 영업 정지에 관한 기준 및 방법·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
<신 설>

## 제5장 보칙

제23조(자료제출)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부동산서비스사 업자 및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
- 4. <u>실태조사</u>의 실시

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16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
이 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
등으로 등록・신고하지 아니한
자는 부동산매매업자, 부동산자
문업자, 부동산분양대행업자 또
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
거나 부동산매매업자등으로 오
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
여서는 아니 된다.

## 제6장 보칙

<u></u>
세23조(자료제출)
-,
1.・2. (현행과 같음)
3금융지원

4.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-

5. (생략)

제25조(청문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제26조(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## ② (생략)

- 제27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1.·2. (생 략) <u>제6장</u> 벌칙 제28조(벌칙) <신 설>

5.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청문)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제22조의15에 따른 등록취
소, 폐쇄명령 및 영업정지
제26조( <u>권한 등</u> 의 위임·위탁) ①
<u>권한 또는 업무</u>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27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
제)
<u>ম</u> ]
<u>127조 및 제129조부터</u>

1.·2. (현행과 같음) 제7장 벌칙

제28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 설>

- 1.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한 법인
- 2. 제22조의8제1항에 따른 부동 산자문업의 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부동산자문업을 한 자
- 3.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부
   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을 하
   지 아니하고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한 자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
- 1. 제22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 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 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매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한 부동산매매업자
- 2. 제22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매수하도록 유인할 목

<신 설>

① · ② (생 략)

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 게 퍼뜨리는 행위를 한 부동 산매매업자

- 3. 제22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부동산자문업자
- 4. 제22조의13제1항제2호를 위 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 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 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을 분양받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한 부동산분양대행업 자
- ③ 제22조의16을 위반하여 부 동산매매업자, 부동산자문업자, 부동산분양대행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부 동산매매업자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④· ⑤ (현행 제1항 및 제2항 과 같음)
- 제29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 제29조(양벌규정) 법인(단체를 포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
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 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0조(과태료) <u><신 설></u>

<u>의</u>
<b>.</b>

- 제3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
   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
 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
  - 2. 제22조의3제1항 또는 제22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부동산분양대행업자

- 3.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매 도한 부동산매매업자
- 4.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통해 발급 받은 감정평가서를 매수인에 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토지 의 일부 지분을 처분한 부동 산매매업자
- 5. 제22조의5제1항제3호(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을 매수할 것을 강요한 부동산매매업자
- 6. 제22조의5제1항제4호(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자
- 7. 제22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

 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
  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
  로 거짓으로 보고한 부동산
  매매업자
- 8. 제2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

<신 설>

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

- 9. 제2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
- 10. 제22조의1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을알선한 자
- 11. 제22조의13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을 분양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한 자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매매업자
- 2. 제22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거짓보고 또는 보고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
- 3. 제2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

- ① (생 략)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-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
- 4. 제22조의9를 위반하여 휴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
- 5. 제22조의10제2항 후단을 위 반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 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를 제출한 자
- 6. 제22조의14를 위반하여 폐업 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
- 7. 제22조의14를 위반하여 업무 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
- 8. 제22조의14를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그 업무나 재무 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거짓 보고 또는 보고하지 않은 자
- ③ (현행 제1항과 같음)
- <u>④</u> 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

\_\_\_\_\_

-----.